

제5장의 제목 “자연보호운동 및 시민참여 등”을 “시민참여 등”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중 “하천의”를 “하천 및 생태계보전지역의”로 한다.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경 위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 321 호

다. 제출일자 : 2003. 9. 26

라. 회부일자 : 2003. 9. 29

2. 제 안 사 유

-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산정방법을 변경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 요 골 자

가.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서 열 판매비 등 수입금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물처리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1항)

나. 자원회수시설이 소재한 자치구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요율을 현행 100분의 32내지 43에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100분의 10으로 조정함.(안 제3조제2항)

다. 시장이 폐기물소각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난방 열원의 판매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소각열을 공급받는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3조제5항)

라. 시장이 법인 또는 단체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8조·제11조)

○ 자원회수시설 : 양천·노원·강남·마포 자원회수시설

○ 주민편익시설 : 양천·노원·강남 주민편익시설

마. 반입수수료에 대한 개정규정은 시설소재지 주민과의 시설 운영개선에 대한 협의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개정된 반입수수료의 50% 적용

○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개정된 반입수수료의 75% 적용

○ 2005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제5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5조·제35조),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제4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1조 내지 제16조),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 - 별첨

나. 예산조치 : 반입수수료 및 주민지원출연금에 관하여 예산담당관과 협의

다. 기타

- (1) 개정조례 전문 : 별첨
- (2) 입법예고(2003. 8. 25 ~ 2003. 9. 14) 결과 : 의견별첨
-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협의결과(2003. 9. 19)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5. 입법예고 의견종합

- 양천구
 - 조례개정의 입법취지에는 동의하나 조례개정 시기를 늦출 것과 추가부담은 서울시가 보조하여 줄 것을 요구
- 노원구
 - 자치구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주민부담이 가중되므로 개정에 반대하고, 구의회 또한 개정철회를 결의
- 강남구
 - 과다용량 건설로 인한 운영적자를 자치구에 전가, “운영적자는 서울시가 책임진다”는 협약을 폐기하는 것이므로 이는 위법 부당하니 개정안 철회 요구 및 법적 대응 검토
- 양천주민지원협의체
 - 주변지역 주민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고 반입수수료 인상은 반대
- 노원주민지원협의체
 - 조례개정 자체를 반대
- 강남주민지원협의체
 - 환경적,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에게 과다용량 건설로 인한 적자까지 전가한다는 이유로 개정을 강행시 월기
- 마포구, 마포구주민, 쓰시협, 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도 반대의사를 제출하고, 용산구는 증거문서를 서울시가 보전해 줄 것을 요구

6. 자원회수시설 현황

< 자원회수시설 추진경위 >

- '91. 9. 28 쓰레기처리 기본계획을 매립에서 소각으로 변경
 -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광역자원회수시설 11개소 16,500톤/일 건설
- '92. 4.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협약 체결
 - 시장 및 22개 구청장이 건설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키로 함.
- '93. 8. 지역주민 반대로 노원자원회수시설 처리권역 변경
 - 노원, 중랑, 동대문(1,600톤/일) → 노원(800톤/일)
- '95. 8. 광역시설을 1구 1시설로 기본계획 변경
 - 자치구별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 2001년까지 착공되는 시설만 시에서 건설비 전액부담 → 마포건설중('01. 11 착공)
- '95. 11. 구청장 및 지역주민 반대로 강남자원회수시설 처리권역 변경
 - 강남, 송파(1,800톤/일) → 강남(900톤/일)
- '97. 12. 마포자원회수시설을 광역시설로 건설하는 협약체결
 - 협약당사자 : 시장, 마포구청장, 중구청장, 용산구청장
 - 협약내용 : 마포구, 중구, 용산구 광역처리, 마포구에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
- '98. 7. 1구 1시설을 광역시설로 변경
 -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을 광역시설로 변경 추진
 - 4개 광역처리 관련구간 폐기물처리 역할분담 시행

<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

- 시설 운영 현황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시설용량(톤/일)	2,100	400	800	900
소각 가동률(%)	24.8	42.5	21.5	19.8
에너지 판매	폐열 (G cal)	189,040	52,370	58,583
	전기 (kw)	340,488	340,488	-

○ 운영비(2003. 1. 1 ~ 8. 31)

(단위: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수 입	3,650,723	1,081,251	1,137,738	1,431,734
지 출	9,180,433	3,237,303	3,067,916	2,875,214
계	△5,529,711	△2,156,052	△1,930,178	△1,443,481

7. 세 부 내 역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내의 3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자 소각 폐기물반입 시 그 수수료의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안 제3조(반입 수수료의 징수등) 반입수수료의 징수방법 변경에 대하여 살펴보면
 -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의 경우 그 동안 반입수수료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와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던 것을 자원회수처리시설의 소각원가로 변경하고,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이외 지역으로부터의 반입 가산금은 32~43%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 반입 가산금은 현재까지 타 구 쓰레기반입불가로 인하여 시행한 일이 없는 제도이며 가산율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맞도록 하향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반입수수료의 산정방법 변경에 대하여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우선 자원회수시설의 현 운영체계와 비교하여 시설소재 자치구의 연간 부담액이
 - 양천구는 14억3천2백만원에서 29억2천9백만원으로
 - 노원구는 11억9천2백만원에서 27억9천6백만원으로
 - 강남구는 10억8천6백만원에서 23억5천8백만원으로
- 두배이상 증가됨으로 이에 따른 자치구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해당구, 구의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반입수수료 조례개정 반대, 주민과의 협약 이행촉구 등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음.
 - 반입수수료 징수방법 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2004. 4. 1~6. 30까지는 산정금액에 100분의 50을, 2004. 7. 1~2004. 12. 31까지는 100분의 75를 징수하도록 규정함.
 - 자원회수시설 용량의 40%이상 가동시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와 소각재 처리비로 한다는 내용은 금액을 현재 수준으로 감면해 줌으로써 시설소재의 자치구청장이 공동이용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제3조제2항 제5호는 소각에 따른 지역난방 열원의 판매단가 산정시 시장 단독으로 하던 것을 소각열을 공급받는 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것임.
- 다음 안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항은 폐촉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조항을 정리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자원회수시설과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또 안 제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자원회수시설관련 주민 편의시설과 그 기능을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준용)를 신설하여 위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것임.

8.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21호로 2003. 9. 29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의 제안사유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기타 협약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자원회수시설의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서 열판매비 등 수입금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물처리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자치구에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적자에 대하여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고 시설용량에 맞게 소각토록 동기를 부여하게 하는 등 서울시의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일종 타당하다 할 것이나 서울시와 강남구 그리고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와의 3자 협약서상(협약서:제3조제1항제8호)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운영시 적자는 갑이 책임진다”고 하여 운영에 대한 운영비의 부담은 서울시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협약하였습니다.

따라서 반입수수료를 운영비와 연계하여 책정토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협약사항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령보다 당사자간의 협약이 우선한다는 관례등 법리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충분한 토의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동 조례안 제3조(반입수수료의 정수 등)제2항은 타 구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요율을 현행 32%~43%로 하던 것을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10%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시기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폐촉법시행령 제5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적용 범위)에서 10%에 대한 개정 시기가 1997. 12. 31이었으나 동 조례를 전문개정(1999. 7. 31)하면서 상위 법령에서 2년여전에 이미 개정되었던 가산금요율의 10%를 조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32%~43% 규정을 그대로 둔 것은 직무유기라 아니 할 수 없으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개정안으로 제출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법 체계를 무시한 사례로써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감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동 조례 제5조, 제8조, 제11조중 시장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에 관하여 수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특수성이 강한 자원회수시설 등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서 구분하여 동 조례에 수용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위탁할 수 있는 시설만 옮겨왔을 뿐 정작 중요한 수탁자의 선정, 운영방법 등을 기존조례에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왕 기존조례와 구분할 바엔 수탁자 선정방법, 운영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동 조례에 수용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시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님과 지역주민대표, 그리고 덕망있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토록 명문화할 때 오히려 많은 민원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